개정된 자전거관련 법령 살펴보기 (〈도로교통법〉과〈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Overview of revised bicycle-related laws (Focusing on Road and Transportation Act and the law for revitalization of bicycle usage)



신승경

정부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에 비례하여 자전거관련 법들이 개정되었다. 가장 반가운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왔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 교통법이라 할 수 있다. 두 법의 개정은 오랜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해가 바뀌기 직전인 2009년 12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토해양부 소관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의 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교통안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 등이다. 이외에도 2010년 1월 22일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자전거이용 권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전거관련 안전표지의 변경등도 자전거와 관련한 법령의 변화이다.

여기서는 6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도로교통법

1. 자전거관련용어

자전거관련용어로는 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자전거횡단도〉와 〈자전거〉가 신설되었고, 〈자전 거도로〉가 개정되었다.

〈자전거횡단도〉는 법 개정 이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으로 이관 되면서 교통시설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에서 교통시설로 법적지위의 변경과 함께 자전거인프라구축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는 도로에 자전거횡단도를 설치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해당 경찰서장 또는 경 찰청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적 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이 시설정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쉽게

신승경 : (사)자전거21 기획관리팀장, pable1993@hanmail.net, 직장전화:02-424-2940, 직장팩스:02-2203-4226

정비될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신설한 것도 획기적이다. 개정 전에는 자전 거를 '차'로 규정은 하였으나 수많은 종류의 자전거 중'차'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문제 발생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도로교통 법 적용대상의 자전거정의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와 이용활성화 대상의 자전거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자전거도로〉의 문제는 도로교통시설로서의 자전거와 자전거이용시설로서의 일관성부여라는 데의의가 있다. 하지만 도로에 포함된 차도, 보도처럼 〈자전거도之〉가 아닌 〈자전거도〉로의 용어정의에 대해서는 도로와 도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해국회에서 자전거관련 법령에 대한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도로와 도를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였으나 결론은 제자리만을 맴돌았을 뿐이다.

2.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우선하여 통행하도록 하

고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 · 65세 이상 노인 ·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나 안전표지로 자전 거통행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들의 자전거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13세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의 요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자전거운전자의 교차로 등에서 통행방법, 2대이상자전거의 병렬통행금지, 횡단보도에서의 통행방법,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예외 등 자전거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들도녹아 있다. 특히, 자전거의 길가장자리구역통행을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지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증진에 많은 기대가 된다.

3. 자전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앞차와 안전거리확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확보 등 교통약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자전거도로 우선통행,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전거이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운전금지등의 의무도 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주요개정내용〉

구분	주요변경내용	비고
용어(제2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규정 (제8호)	개정
	자전거횡단도 신설(제8의2)	신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의 자전거로 규정(제18의2호)	신설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11조)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모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하도록 개정(제11조 제3항)	개정
차마의 통행 (제13조)	자전거도로우선통행 규정을 자전거통행방법의 특례(제13조의2)로 이관하고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을 금 지하도록 규정(제13조 제6항)	개정

신승경

구분	주요변경내용	비고
자전거통행방법의 특례 (제13조의2)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우선 통행하도록 규정(제1항)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도록 규정(제2항)	
	자전거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제3항)	
	자전거운전자의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제4항) ※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안전 표지로 자전거통행을 허용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 및 공사, 통행장애 등이 있는 경우 보도통행 허용	신설
	자전거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제5항)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서 보행하도 록 규정(제6항)	
과 기 의 원 · · ·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 도록 규정(제1항)	
자전거횡단도 (제15조의2)	자전거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도록 규정(제2항)	신설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제3항)	
안전거리확보 등 (제19조)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는 자전 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 확보(제2항)	신설
진로양보의무 (제20조)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제1항)	개정
앞지르기 방법 등 (제21조)	자전거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자 하는 경우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도 통행 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	신설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도록 규정(제3항)	개정
	속도를 높이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 방해 금지 (제4항)	개정
교차로통행방법 (제25조)	모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규정(제1항)	개정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도록 규정(제3항)	신설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신호를 한 앞 차의 진행을 방해 금지(제4항)	개정
보행자보호(제27조)	보행자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 (제1항)	개정
특정운전자준수사항 (제50조)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제4항)	신설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함(제7항)	신설
	자전거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할 경우 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제8항)	신설

II.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정책방향

자전거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개정의 특징 은 종전에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였던 것에 반해 자전거이용활성화라는 포괄적인 내용, 즉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로서 자 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제 1조의 제정목적에서부터 (개정 전까지 그래왔듯이)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이용시설마련에 집중하는 인상을 주는 내용들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법의 주요내용이었던 '자전거이용시설정비'가 '자전거이용활성화'로 변경되었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도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포함), 시·군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하던 것이 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 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목적(제1조)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목적으로 함	개정
정의(제2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 규정하고 크기와 구조에 대해 서는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호)	전문 개정
자전거도로구분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있어 기존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삭제하고 자전거전용 차로를 추가함.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함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자전거이용시설정비위주의 시책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 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항)	개정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4항)	신설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제4조 의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자전거의 날은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제2조의2)	신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항) ※ 개정전 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였으나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를 모든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개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제4항) ※ 개정전 이용시설정비계획 수립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였음	개정

신승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제11조)	「주차장법」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제1항) ※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총면적을 기준하여 100분의 5로 하도록 함. (시행령 제7조제1항)	개정
	「주차장법」제12조,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설치(제2항) ※ 설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하여 100분의 5로 하도록 함. (시행령 제7조제1항)	신설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즉 부설주차장에도 자전거주 차장 설치를 의무화 함(제3항)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 치하도록 함(시행령 제7조제2항)	개정
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제11조의2)	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도록 함	신설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제13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항)	신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3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1항)	신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항)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제1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도록 함(제1항)	신설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2항)	
자전거의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할 수 없도록 함(제1항)	개정
무단방치금지 (제20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제2항)	개정
자전거타기의	초·중학교의 자전거교통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 함(제1항)	개정
교육 등 (제21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에 대한 자전거이용관련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함(제2항)	
자전거의 등록 (제22조)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항)	개정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도록 함(제2항)	신설

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만 들어졌다.

2. 자전거의 정의

자전거에 대한 정의, 자전거의 구조와 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도로교통에서의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 안전이나 교통시설에 부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용활성화대상의 자전거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 최소의 요건만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않고 있다.

3.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도로의 구분에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는 삭제하고 자전거전용차로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로(道路), 도(道), 로(路) 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전거전용 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전용차로의 종류 이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서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자전거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한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노외 주차장은 물론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도 자전 거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전거교육 의무화 및 확대 등

초·중학교에 대한 자전거교육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교육 대상에 주민 까지 영역을 확대하였다. 주민대상의 교육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함께 자전거안전사고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나 종합복지관을 활용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도록하는 등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도입되었다.